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616호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‘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’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서울주택도시공사		
	주 소	우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		
	전화번호	02-525-8865	팩스번호	02-3410-8529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(주)광장브이디에스		
	주 소	우06657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1길 36		
	전화번호	02-745-4722	팩스번호	02-745-4725
신청인(3)	법인명(성명)	(주)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		
	주 소	우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20, B타워 5~6층)		
	전화번호	02-633-3000	팩스번호	02-6332-3000
신청인(4)	법인명(성명)	(주)원하이텍		
	주 소	우27650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99		
	전화번호	02-854-2818	팩스번호	02-854-2818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778호
- 명 칭 :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
- 기술분야 : 건축 > 철근콘크리트 > 기타 철근콘크리트
- 신기술의 내용
이 신기술은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중공슬래브 공법으로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(발포폴리스틸렌 재질)와 고정장치(일방향 :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, 이방향 : T바+앵글)를 설치하고,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.
- 신기술의 범위
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(발포폴리스틸렌 재질)와 고정장치(일방향 :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, 이방향 : T바+앵글)를 설치하고,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- 가. 보호기간 : 2015.11.16. ~ 2028.11.15.(13년)
-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 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 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 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

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